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3월 30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8년 4월 9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8년 4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가. 제안이유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종료 및 2018년 국가 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로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반영하여 행정 기구를 개편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실·과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안 제3조)
 - 올림픽추진단, 올림픽운영과 폐지
 - 올림픽기념사업단, 시설관리과 신설
- 담당 단위 조정
 - 담당신설 : 8담당

부 서	담 당	부 서	담 당
종합민원과	① 지적재조사	도시주택과	⑤ 교통관리
재 무 과	② 계약	시설관리과	⑥ 시설운영
경제체육과	③ 스포츠마케팅	시설관리과	⑦ 문화시설
도시주택과	④ 도시재생	보건사업과	⑧ 정신치매

- 담당페이지 : 4담당

부 서	담 당	부 서	담 당
올림픽추진단	① 자원봉사	올림픽운영과	③ 숙박음식
올림픽운영과	② 대회지원	올림픽운영과	④ 문화올림픽

○ 담당명칭변경 : 8담당

부 서	담 당	부 서	담 당
기획감사실	① 규제개혁 ⇨ 법무규제	올림픽추진단	⑤ 대회홍보 ⇨ 국제행사
문화관광과	② 관광올림픽 ⇨ 축제지원	올림픽추진단	⑥ 시민참여 ⇨ 기념사업
경제체육과	③ 올림픽전략산업 ⇨ 일자리정책	올림픽시설과	⑦ 도시정비 ⇨ 도시경관정비
도시주택과	④ 교통 ⇨ 교통행정	올림픽시설과	⑧ 경관정비 ⇨ 사후활용

○ 담당업무이관 : 2담당

현 재		변 경	
부 서	담 당	부 서	담 당
경제체육과	체육시설	시설관리과	체육시설
보건사업과	예방의약	진료지원과	예방의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용호)

- 본 조례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종료와 2018년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로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주요 개정사항인 과 설치기준 폐지 등 지자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내용을 적용하여 과 단위 직제개편으로 한시기구인 올림픽추진단, 올림픽운영과 등 2개 부서를 폐지하고, 신설기구로 올림픽기념사업단, 시설관리과 등 2개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과 담당 단위 업무조정으로 8담당 신설, 4담당 폐지, 8담당 담당명칭변경과 2담당 담당업무이관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대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직정비와 자치분권이 강조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신속한 조직개편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문화관광과·주민생활지원과·종합민원과·자치행정과·재무과·경제체육과·환경위생과·산림과·안전건설과·도시주택과·올림픽추진단·올림픽운영과·올림픽시설과”를 “기획감사실·문화관광과·주민생활지원과·종합민원과·자치행정과·재무과·경제체육과·환경위생과·산림과·안전건설과·도시주택과·올림픽기념사업단·올림픽시설과·시설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자원봉사계획 수립 및 개발 운영

제3조제2항제7호라목 중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을 “체육진흥”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일자리 관련 업무

제3조제2항제11호나목 중 “도시건설”을 “도시건설 및 도시재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올림픽기념사업단

제3조제2항제1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행사 관련 업무

제3조제2항제12호가목(중전의 다목) 중 “유산계획, 영향(OGI)”을 “청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올림픽 유산 관련 업무

라. 올림픽 기념사업 관련 업무

제3조제2항제12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시설관리과

가. 체육시설의 구성에 관한 업무

나.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다. 문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15조 중 “호적·주민등록업무민원서류”를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민원서류”로 한다.

제19조 중 “호적·주민등록업무”를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올림픽운영과장”을 삭제한다.